

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10. 13 -----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10. 18

다. 상 정 일 자 : 제87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2차 총무위원회(10. 30) 상정,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윤여철 세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무인민원 증명발급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을 규정하는 등 무인발급기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무인민원 증명발급기를 사용하는 경우 전자수입증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.
- 무인발급기의 사용부서장은 기기의 사용에 필요한 발행기관명, 발행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나 구 게시판에 고시하도록 함.
- 무인발급기에 의하여 인영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 등을 정함.
- 기타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정비 개선함.

3. 관련법령

-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이번 개정 조례는 2000년 11월중에 시범 보급하는 무인민원 발급기(1대) 설치와 관련하여 무인민원 증명발급 시스템운영에 대비하고 관인 및 수입증지를 전자화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구 조례를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5. 결의답변 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